

## 1. 개정이유

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의 항공안전감독 국제기준(DOC8335)이 '22년에 개정됨에 따라 운항감독관의 자격과 경험요건 등을 개선하고,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조종분야 자격요건 및 사용사업 및 자가용 감독관의 업무범위와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경험요건 개선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감독관 출신(LCC 등) 다양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총 비행시간 기준을 하향하고자 함(現 5천→ 4천)(안 별표 1)
- 나.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조종분야 자격요건에 '운송용조종사' 자격 소지자도 추가하고, 항공기사용사업 및 자가용 감독관의 업무 범위와 필요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경험요건을 3년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(안 별표 1)
- 다. 연간감독계획 수립 관련 전년 실적분석을 통한 감독계획 수립 필요 등 현실을 반영하여 수립시기를 당해연도 1월로 조정(現 전년도 12월)하고, 회전익 운항감독관 자격요건 중 '비행기'를 '헬리콥터'로 수정하고자 함(안 제11조제1항 및 별표 1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항공안전법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- 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 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개정훈령안

항공안전감독관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”를 “매년도 1월말까지 연간”으로 한다.

제24조 중 “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 248호) 」 ”를 “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”으로, “2024년 6월 30일”을 “2026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[별표 1] 감독관의 자격 및 경험요건(제5조 관련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 분	자 격 및 경 험 요 건
①공통사항	1. 요구역량 : 고객·수혜자 지향, 전문성, 문제인식·이해, 의사소통능력, 사고·판단력, 청렴성 등을 갖추고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 2. 교육훈련요건 가. 해당분야 감독관 초기교육, 직무교육 및 정기교육 또는 재자격 부여 교육을 이수한 사람 나. 감사기법 및 청렴교육을 이수한 사람
②국제항공운송사업	1. (고정익, 조종분야) 아래 가호 및 나호를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. 가.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

구 분	자격 및 경험요건
자	<p>근무경력</p> <p>나.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(비행기) 3,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항공기(비행기) 비행시간 <b>4,000시간</b> 이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운송용 항공기의 기장경력</li> <li>2) 항공분야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</li> <li><del>3) SMS 전공자</del></li> </ol> <p>2. (회전익, 조종분야) 아래 가호 및 나호를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</p> <p>나.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(<b>헬리콥터</b>) 2,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항공기(<b>헬리콥터</b>) 비행시간 3,000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운송용 항공기의 기장경력</li> <li>2) 항공분야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</li> <li><del>3) SMS 전공자</del></li> </ol> <p>3. (운항관리분야)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 <p>4. (감항분야)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 <p>가. (가급) 국제항공운송분야 10년 이상</p>

구 분	자격 및 경험요건
	<p>나. (나급)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</p> <p>5. (객실안전분야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가. 선임객실승무원 이상의 경력과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나. 객실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 교육·감사(Audit)경험을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 <p>6. (사실조사-고정익, 조종분야) 아래 가호 및 나호를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.  가.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 나.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(비행기) 3,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항공기(비행기) 비행시간 4,000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  1) 운송용 항공기의 기장경력  2) 항공분야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  <del>3) SMS 전공자</del></p> <p>7. (사실조사-감항분야)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경력</p>
③국내항공운송사업자	<p>1. (고정익, 조종분야) 아래 가호 및 나호를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.  가.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  나.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(비행기) 3,000시간 이상을 포함</p>

구 분	자격 및 경험요건
	<p>한 총 항공기(비행기) 비행시간 <b>4,000시간</b> 이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 <p>1) 운송용 항공기의 기장경력</p> <p>2) 항공분야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</p> <p><del>3) SMS 전공자</del></p> <p>2. (회전익, 조종분야) 아래 가호 및 나호를 모두 충족 하여야 한다.</p> <p>가. 운송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</p> <p>나.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(<b>헬리콥터</b>) 2,000시간 이상을 포함한 총 항공기(<b>헬리콥터</b>) 비행시간 3,000시간 이상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 <p>1) 운송용 항공기의 기장경력</p> <p>2) 항공분야 국제기구 또는 정부기관에서 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</p> <p><del>3) SMS 전공자</del></p> <p>3. (운항관리분야) 운항관리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 <p>4. (감항분야)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취득한 이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 <p>가. (가급) 국제항공운송분야 10년 이상</p> <p>나. (나급)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</p> <p>5. (객실안전분야)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을 보유한</p>

구 분	자격 및 경험요건
	<p>사람</p> <p>가. 선임객실승무원 이상의 경력과 국제항공운송분야 5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 <p>나. 객실분야 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분야 교육·감사(Audit)경험을 5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사람</p>
④소형항공운송사업자	<p>1. 항공분야 5년 이상 근무 경력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</p> <p>가. (조종분야) : <b>운송용 조종사 또는</b> 사업용 조종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</p> <p>나. (운항관리분야) : 운항관리사 자격증명</p> <p>다. (감항분야) : 항공정비사 자격증명</p>
⑤항공기사용사업자	<p>1. 항공분야 <b>3년</b> 이상 근무 경력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</p> <p>가. (조종분야) : <b>운송용 조종사 또는</b> 사업용 조종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</p> <p>나. (운항관리분야) : 운항관리사 자격증명</p> <p>다. (감항분야) : 항공정비사 자격증명</p>
⑥자가용소유자	<p>1. 항공분야 <b>3년</b> 이상 근무 경력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증명을 소지한 사람</p> <p>가. (조종분야) : <b>운송용 조종사 또는</b> 사업용 조종사 또는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</p> <p>나. (운항관리분야) : 운항관리사 자격증명</p> <p>다. (감항분야) : 항공정비사 자격증명</p>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감독계획의 수립)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항공안전감독계획(이하 “감독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하며, 매월 27일까지 수립된 연간 감독계획 등을 반영하여 다음 달의 월간 감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</p> <p>② ~ ⑤ (생략)</p> <p>제24조(유효기간) 이 규정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(대통령훈령 제248호)」에 따라 이 규정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</p>	<p>제11조(감독계획의 수립) ① ----- ----- -- <u>매년도 1월말까지 연간</u> 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②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4조(유효기간) -----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2026 <u>년 12월 31일</u>----- --.</p>